

반부패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가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야기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본 양해각서가 부패 척결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당사국 상호 간 최대한의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하는 유엔 부패방지 협약 제6장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바와 같은 국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됨을 고려하여, 부패 예방 및 척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양자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력의 목적

양해각서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관계의 설정 및 강화
- ② 부패방지 시스템, 전략, 정책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역량 및 제도구축의 증진과 향상

제2조 협력 분야

각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국의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 있어서 양자 간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이에 기여한다.

- ① 당사자 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 경험, 우수사례의 공유 및 교환
- ②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지식이전과 같은 방법을 통한 당사자 간 협력 증진
- ③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의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협력
- ④ 양자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 회의의 지원
- ⑤ 당사자의 직원에 대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⑥ 기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의 협력 수행

제3조 협력조정위원회

1.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을 이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당사자의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협력 가능한 분야의 개발, 이에 대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이익의 검토,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한다.
3.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은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력 활동을 제안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일자와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4조 연락 및 의사소통

1.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공식적인 연락을 담당할 연락담당부서를 지정한다.
2. 각 당사자의 연락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30102)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전화: (82)-44-200-7151-6
팩스: (82)-44-200-7916
이메일: acrc@korea.kr
웹사이트: www.acrc.go.kr

②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t
Directorate Fostering Networks
between Commission and Institution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Jl. H.R. Rasuna Said Kav C-1 Kuningan, Jakarta Selatan,
Indonesia 12920
전화: (6221) 25578300 ext. 8703
팩스: (6221) 2525926
이메일: international@kpk.go.id
웹사이트: www.kpk.go.id

3. 연락담당부서를 변경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 모든 연락 및 의사소통은 영어로 한다.

제5조 비용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양해각서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6조 정보의 비밀엄수

1. 일방으로부터 획득한 비밀 정보 및 문서에 대하여 언제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기소, 사법,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각자의 관할권에 적용되는 비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양해각서가 그러한 의무와 조건을 대치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인지한다.

제7조 이행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와 당사자의 법률적·정책적 체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제8조 이견 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9조 효력발생, 지속기간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으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3. 본 양해각서는 최소 3개월 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기존 추진 중인 협력활동은 양해각서의 종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개정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하고 개정한다.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허가를 받은 대표가 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을 따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서명한 날짜에 효력을 가지고, 본 양해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2016년 5월 16 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각 2부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아구스 라하르조